

보도시점 2025. 3. 13.(목) 12:00 / 배포 2025. 3. 13.(목) 08:30
< 3.14.(금) 조간 >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비알코리아(주) 제재

- 주방 설비, 소모품 등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주)(이하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①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②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였다.

*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붙임> 비알코리아(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세부내용

담당 부서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책임자	소 장	임선정 (042-481-8001)
		담당자	과 장	박형건 (042-481-8007)
			조사관	엄승필 (042-481-800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법 위반 내용

1.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

가. 행위사실

- 비알코리아는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38개 필수품목을 지정하여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였다.

〈 비알코리아가 강제한 필수품목 목록 〉

연번	품목	연번	품목
1	냉작업대(1200)	20	아일랜드형 도너츠진열장
2	냉작업대(1500)	21	아일랜드형 진열장 문
3	냉작업대(1800)	22	아일랜드형 HMR냉동고장
4	냉작업대(900)	23	아일랜드형 MD진열장
5	냉작업대(서랍형, 1200)	24	아일랜드형 상부진열장(2단)
6	냉작업대(서랍형, 1500)	25	벽면형 트레이장
7	냉작업대(서랍형, 1800)	26	벽면형 도너츠진열장
8	냉작업대(서랍형, 900)	27	벽면형 진열장 문
9	냉동작업대(1200)	28	벽면형 HMR냉동고장
10	냉동작업대(1500)	29	벽면형 MD진열장
11	냉동작업대(900)	30	냉장쇼케이스
12	일반작업대(600)	31	냉장쇼케이스 압축기 실외설치 용역(기본)
13	일반작업대(1200)	32	냉장쇼케이스 압축기 실외설치 용역(추가)
14	일반작업대(1500)	33	DID 메뉴보드
15	싱크대 선반	34	채반
16	싱크대	35	채반(스테인리스)
17	HMR냉동고(5단)	36	샌드위치 박스
18	HMR냉동고(4단)	37	유산지(진열용)
19	아일랜드형 트레이장	38	밀지('쥬이먼치킨' 전용)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 상품의 맛과 품질이 달라지는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단서를 충족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구속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거래를 강제한 38개 품목은 특별한 기능 없이 단순한 용도로 사용되어 도넛·커피의 맛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 또한,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기능·규격·디자인 등의 기준을 제시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그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게 하여도 됨에도 비알코리아는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던킨/던킨도너츠 브랜드와 유사한 업종(제과·제빵, 커피류 판매)을 운영하는 다른 가맹본부들은 비알코리아가 거래를 강제한 38개 품목과 유사한 품목들을 권장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알코리아의 위 행위는 동종업계의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 가맹본부가 품목의 기준·사양 등을 가맹점주에게 제시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충족하는 물품을 구입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하는 품목
- 따라서, 비알코리아의 위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주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

2. 불완전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행위

가. 행위사실

-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

나. 위법성 판단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다.
- 따라서, 비알코리아의 위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적용법조 및 조치 내용

법 위반 내용	적용법조	조치 내용
①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향후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2,136백만 원)
② 불완전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행위	법 제7조 제3항	○ 경고**

* 38개 필수품목 중 일부 품목(4개)은 현재까지 위반행위가 진행 중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중지명령을, 일부 위반행위가 종료된 품목(34개)에 대해서는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

** 시정조치의 대상이나,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에 따라 ‘경고’

-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또한,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 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2. 관련 규정

참고 1

가맹본부 일반현황

□ 가맹본부명 : 비알코리아(주)

법인 설립일	던킨/던킨도너츠 가맹사업		
	영업표지	가맹사업 시작일	업종
1985.6.7.	던킨/ 던킨도너츠	1995.1.15.	제과제빵(도넛, 핫샌드위치, 커피, 음료 등)

* 출처 : 던킨/던킨도너츠 정보공개서

□ 매출액 등 현황

(연도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가맹점/ 직영점수
2021	694,942	129,551	565,391	750,722	79,223	63,569	613/105
2022	681,062	101,530	579,532	791,699	33,859	33,215	633/74
2023	656,886	99,645	557,241	706,525	-29,026	-12,325	631/59

*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던킨/던킨도너츠 정보공개서

가. 거래상대방 구속행위(필수품목 강제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6. (생략)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다. ~ 마. (생략)

나. 불완전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④ (생략)